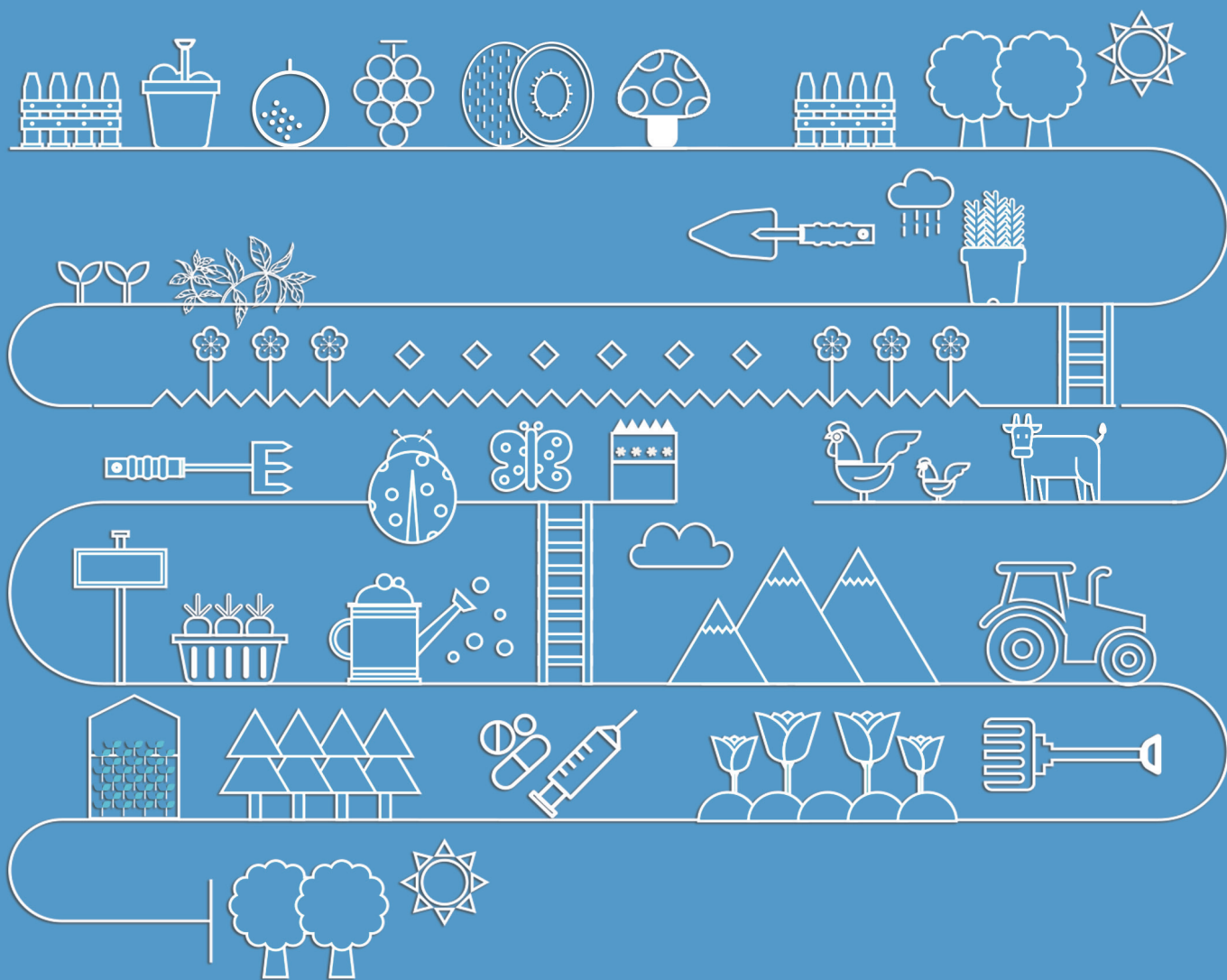


한국산 포도 수출 프로토콜 및 국가별 수출 검역요건

(Korean Grape Export Protocol and Quarantine Requirements by Country)



한국산 포도 수출 프로토콜 및
국가별 수출 검역 요건

※Contents

I. 포도 수출 프로토콜

1. 프로토콜

① 수출 프로토콜.....3

II. 포도 수출 검역요건

1. 아시아

① 중국7
② 태국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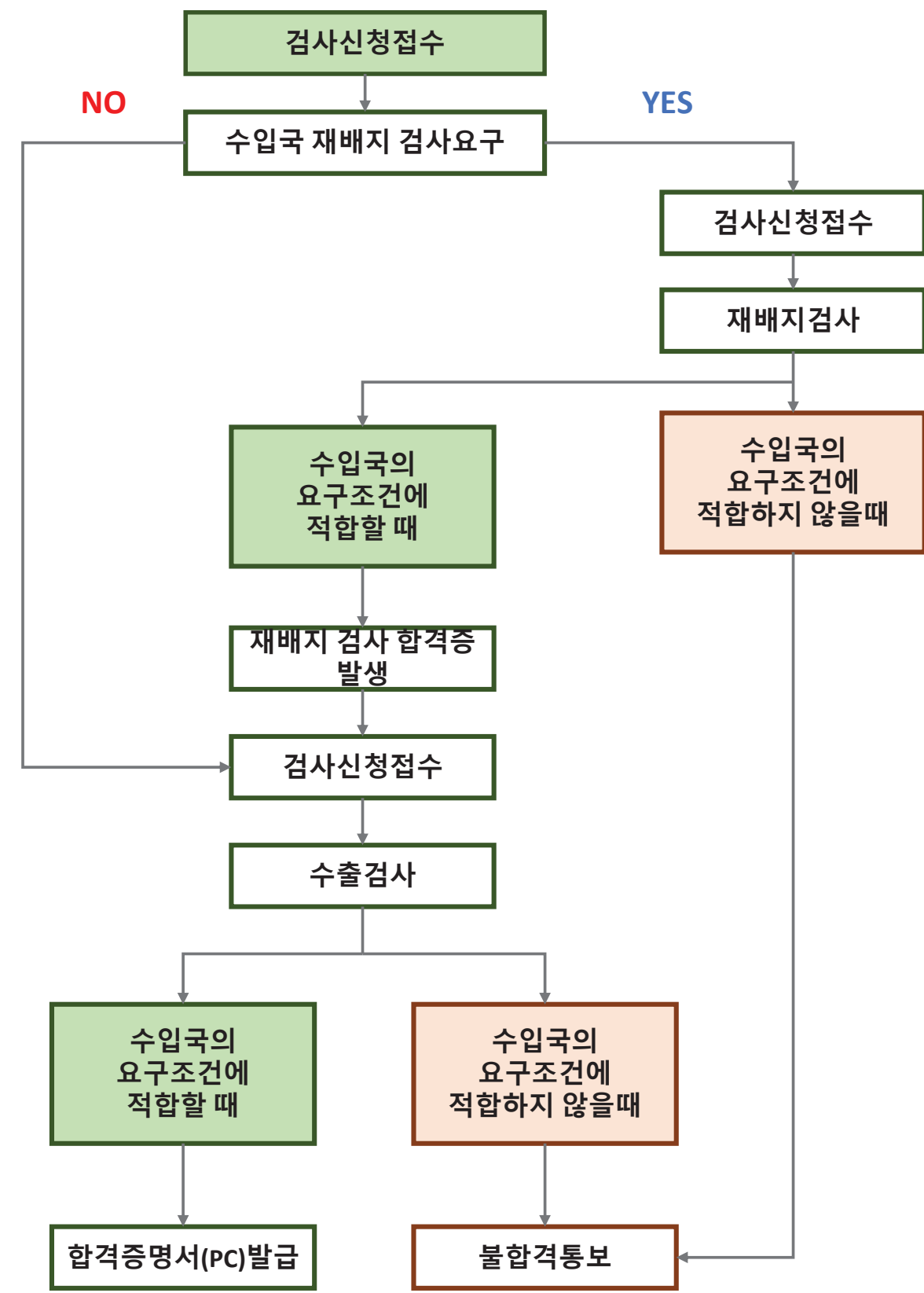
2. 북미

① 미국43
② 캐나다51

3. 오세아니아

① 뉴질랜드59
② 호주78

□ 수출 프로토콜



아 시 아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조(적용 대상)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중국측 우려 검역병해충) 포도와 관련하여 중국측에서 우려하는 검역병해충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고사리그물총채벌레(*Hercinothrips femoralis*)
2. 온실가루각지벌레(*Planococcus kraunhiae*)
3. 포도뿌리혹벌레(*Viteus vitifolii*)
4. 버티실리움시들음병(*Verticillium dahliae*)

제3조(수출단지 지정 신청 및 등록) ① 중국으로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는 그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그 해의 3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물검역 수출단지 지정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농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출 선과장 또는 생산자 조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동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1. 후보지의 재배지 목록(참여 농가명, 전화번호, 재배지 지번, 재배면적, 재배 주수, 생산예상량 포함)
2. 생산단지 지도(1/25,000)

3. 선과장과 저장시설의 약도, 평면도 및 주요 시설 및 장비 목록

4.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인증서(인증을 받은 경우)

5.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서(지정을 받은 경우)

②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출단지 참여농가 및 단지내 선과장에 대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식물검역 수출단지 지정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식물검역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③ 과거에 지정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다시 지정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출과수원이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및 선과장 등록 상황을 매년 6월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개시 전까지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을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AQSIQ”이라 한다)에 통보 한다.

제4조 (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수출단지는 병해충 방제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가급적 집단화 되어 있어야 한다.

2. 수출용 포도 재배 과수원은 울타리, 밭둑, 이랑, 농로 등의 방법으로 경계선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3. 수출용 포도 재배 과수원 내 또는 그 주변에는 관리되고 있지 않는 재래식 화장실, 퇴비장, 축사 또는 전정된 가지 등 병해충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4. 수출단지에는 그 수출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역농협, 전문농협, 영농조합 및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이 결성·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제5조(선과장 요건) 중국 수출용 포도 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선과장에는 부패된 과실,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 등을 선별할 수 있도록 선과시설 및 조명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병해충의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출입구, 창문 등에 방충망 또는 에어커튼 등의 방충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선과장에는 수출검역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조명이 갖추어진 검사대 및 별도의 수출검역 장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4. 선과장은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되어야 한다.

5. 각 선과장은 선과장 내부에 최소 2개의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고 선과기간 중에는 매일 중국측 우려 검역병해충 발생유무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중국측 우려 검역병해충 발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내수용 및 다른 국가 수출용 포도와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

는 저온창고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7. 선과장에는 수출용 포도를 선과, 포장 및 보관하는 과정을 관리·감독할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단지 지정의 취소) ① 수출단지 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수출단지, 과수원 및 선과장에 대하여는 지정 단위별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출검역 또는 도착지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수출과수원의 관리) ① 재배자 또는 관리자는 재배기간 중 중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의 발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트랩조사(끈끈이 트랩 등) 또는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약제방제 또는 생물적 방제를 실시한다.

② 재배자 또는 관리자는 모든 예찰 및 약제 살포 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동 기록은 중국의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는 등록된 약제이어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등록된 약제 목록을 AQSIQ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중국 수출용 포도는 봉지를 씌워 재배되어야 하며, 수확이 완료되어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⑥ 농림축산검역본부(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포함)의 식물

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수출과수원의 병해충 예찰, 방제 및 위생관리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수확 및 선과) ① 식물검역관은 포도 수확기에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중 낙과되지 않고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과실만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직접 수확되고 봉지가 씌워진 채로 선과장으로 운반되어야 하며, 봉지는 선과 직전 선과장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③ 선과책임자는 중국 수출용 포도에 곤충, 응애, 부패과, 변형과, 가지, 잎, 뿌리 및 흙이 부착되지 않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하며, 특히 포도송이 내부에 중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는 중국으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적절한 소독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단, 해당 소독 조치는 AQSIQ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⑤ 선과 및 포장 과정 중 무작위로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하여야 한다.

⑥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는 병해충 감염을 막기 위하여 전용창고에 분리 보관되어야 한다.

제8조(포장 및 라벨링) ① 포장재는 깨끗하고 사용되지 않은 것 이어야 하며, 만약 상자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충망이 씌워져야 한다.

②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에 병해충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상자에 유황패드를 넣어야 한다.

③ 각 포장상자에는 봉인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해당 봉인 라벨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수출단지 대표자는 테이프, 스티커 등 원하는 형식의 봉인 라벨을 제작·사용할 수 있다.
2.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7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봉인 라벨의 샘플과 도안 또는 사진을 제공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단, 등록 후 라벨의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최초 등록으로 갈음한다.
3. 봉인 라벨을 제출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봉인 라벨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4. 선과장별 봉인라벨 등록 현황은 중국의 요청 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영어로 품명, 원산지(시 또는 군), 수출국, 과수원명 또는 그 등록번호, 선과장명 또는 그 등록번호 및 기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⑤ 각 포장의 소포장용기(트레이)에는 “중국 수출용”이란 문구를 중국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소포장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각 포장상자에 그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일반적인 한국의 과실류 수출 검역 절차에 따라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의 검사단위별로 표본을 채취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1. 선박화물의 경우 각 화물별 2% 이상, 최소 600개 포도송이
2. 항공화물의 경우 각 화물별 10% 이상

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중국의 우려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화물이 생산된 과수원 그리고/또는 선과장에서 생산된 포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을 중단시켜야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병해충 발견 상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병해충 발견 상황을 AQSIQ 또는 중국의 도착지 검역국(CIQ)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각 포도 화물에 대해 다음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This Batch of Grapes Meet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for Export of Table Grapes from Korea to China’ and are free of Quarantine Pests of Concern to China”

(이 화물은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검역 요건에 부합하며, 중국 측이 우려하는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⑤ 중국측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개시 전에 AQSIQ에 식물검역증명서 샘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보관 및 운송) 선과 책임자는 포도를 포장, 저장 및 운송하는 동안, 포장이 완료된 화물에 병해충이 재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상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식물검역관은 이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11조(중국의 수입검역) ① 포도 화물이 중국의 수입항에 도착하면, 해당 항구의 검역국(CIQ)에 검역 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동식물 수입 면허(허가서), 기타 관련 서류 및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검역을 실시한다.

② 포도 화물이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화물은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살아 있는 중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소독 또는 반송, 재수출 또는 폐기된다.

④ AQSIQ는 해당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과수원산 포도의 대중국 수출을 중단하거나 실제 상황에 따라 모든 포도의 중국 수출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취해야 하며, AQSIQ는 이러한 개선조치의 결과를 평가하여 수출중단 조치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현지조사 및 현지검역) ①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 프로젝트 개시 전, AQSIQ는 2명의 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하여, 중국 수출 과수원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포장 및 저온저장 관리 상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최소한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 시작 첫 해에는, AQSIQ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합동 검역을 실시한다.

③ 살아있는 중국의 우려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하며, 개선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④ 수입검역 결과에 따라 AQSIQ는 다음 수출 시준 현지검역을 위한 검역관 파견 여부를 결정한다.

⑤ 중국 검역관의 한국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여비, 항공료, 숙박비 및 기타 비용)은 한국측에서 부담한다.

제13조(추가 위험평가) AQSIQ는 한국산 포도의 병해충 발생 및 수입검역 결과 병해충 검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검역병해충 목록 조정 및 상응하는 검역조치를 취할 경우 검역본부와 적절히 협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수출 첫 해에는 이 고시의 제3조(수출단지의 지정 신청 및 등록) 및 제8조(봉인 및 라벨링)의 지정 신청, 봉인 및 라벨링 등록 기한을 적용하지 않고, 이 요령 고시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식물검역 수출단지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기 관 명 (생산자 조직명)		직 책	
	기관주소	(전화:)		
단 지 명	단 지 명	(국문명)	대 표 자	(국문명)
		(영문명)		(국문명)
	단지주소	(국문명)	생산예상량	
		(영문명)		
	단지면적(㎡)		재배농가수	
수출단지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선 과 장	주 소			
	주요 시설 및 장비			
품 목		수 출 국		
수출계획량		전년도 수출실적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00호「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의거 포도 중국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출단지 대표 (서명 또는 인) 농 립 축 산 검 역 본 부 00 지역본부장 또는 00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후보지의 재배지목록(참여 농가명, 전화번호, 재배지 지번, 재배면적, 재배주수, 생산예상량 포함) 1부 2. 생산단지 지도(1/25,000) 1부 3. 선과장과 저장시설의 약도, 평면도 및 주요시설 및 장비 목록 1부 4.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인증서(인증을 받은 경우) 사본 1부 5.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서(원예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단지의 경우) 사본 1부				

(첨 부1)

포도 중국 수출 참여농가 목록

참 여 농가명	전화번호	재배지 주소(지번)	재배면적 (㎡)	재 배 주 수	생산예상량	비 고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국문)		(국문)				
(영문)		(영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 부2)

수출단지 선과장 내역서

선과장명	(국문)			
	(영문)			
총면적(㎡)		선과 과실명		
시 설	검사대, 조명 장치 유무	출입구, 창문 등 방충시설 유무	집진시설 등 병해충 제거장치	트랩설치 유무 (끈끈이판 2개)
선과장 소재지	(국문)			
	(영문)			
소 유 자	주 소	(전화 :)		
	성 명	(국문)	생년월일	
(영문)				
관리책임자	성 명	(국문)	전화번호	
		(영문)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창고번호	면적(㎡)	수용량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식물검역 수출단지 지정서

지정번호 : ○○○○(지정년도) - ○○(검역지코드) - ○○(일련번호)			
신청 기관		대 표 자	(국문)
			(영문)
단 지 명	(국문)	단지 주소	(국문)
	(영문)		(영문)
단지면적(㎡)		참여 농가수	
품 목		수 출 국	
수출단지 관리자			
선과장주소		재배지 목록	별 첨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의거 포도 중국 수출단지 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00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인)			
붙임 1. 포도 중국 수출 참여농가 목록 1부 붙임 2. 수출단지 선과장 내역서 1부			

(첨 부2)

수출단지 선과장 내역서

등록번호	P - ○○(검역지코드) - ○○(일련번호)			
선과장명	(국문)			
	(영문)			
총면적(㎡)		선과 과실명		
시 설	검사대, 조명 장치 유무	출입구, 창문 등 방충시설 유무	집진시설 등 병해충 제거장치	트랩설치 유무 (끈끈이판 2개)
선과장 소재지	(국문)			
	(영문)			
소 유 자	주 소	(전화 :)		
	성 명	(국문)	생년월일	
		(영문)		
관리책임자	성 명	(국문)	전화번호	
		(영문)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창고번호	면적(㎡)	수용량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식물검역 수출단지 등록대장

지정 번호	등록 일자	품목	수출국	수출단지명	단지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명	단지 면적 (㎡)	비고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중국 포도 수출 선과장 예찰기록대장

□ 선과장명(등록번호) :

선과포장일자 (월/일)	예찰시간	조사자	중국측 우려병해충 발견 유무(병해충명/개체수)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중국 수출용 포도 과수원 예찰 및 방제 기록부

- ☐ 재 배 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재배지주소 :
- ☐ 재배지 면적 : m²
- ☐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조치 사항

예찰 및 방제 일자	병해충 발견유무 (병해충명/개체수)	방제 방법 (약제명, 사용량)	비 고 (검역관 확인)

[별지 제6호서식]

중국 수출용 포도 상자 봉인 라벨 등록 대장

- ☐ 농림축산검역본부
- 지역본부·사무소

수출단지(지정번호) :

과실 품종		제품 브랜드 명칭
봉인 라벨	번호	형 식
		테이프, 스티커 등

봉인 라벨 도안 또는 사진

* 봉인 라벨 샘플은 별도 보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1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원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의 생과실 6종(이하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복숭아(*Prunus persica*)
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
3. 배(*Pyrus pyrifolia*)
4. 사과(*Malus domestica*)
5. 감(단감 포함)(*Diospyros kaki*)
6. 딸기(*Fragaria* × *ananassa*)

제2조(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DOA”란 태국 식물검역당국을 말한다.
2. “수출과수원”이란 태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을 말하며 온실을 포함한다.
3. “수출선과장”이란 태국 수출용 생과실을 선과, 포장 및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SOP”란 선과장에서 이루어지는 선과, 포장 및 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표준작업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말한다.

제4조(태국의 검역병해충) 한국산 생과실과 관련하여 태국에서 우려하는 검역병해충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요건) ① 수출과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태국 수출과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업용 과수원이어야 하며 DOA가 요청할 경우 등록증(수출농가 목록이 첨부된 선과장 승인서로 같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수출과수원은 과수원 위생상태 유지, 병해충 통합 관리 이행 또는 그 밖에 태국의 검역병해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병해충 방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3. 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수출과수원의 재배자는 재배 기간 동안 등록 과수원의 위생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활동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태국 수출과수원(온실) 병해충 예찰·방제 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단, 재배자가 동 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양식을 비치하여 기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음할 수 있다. 해당 기록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DOA가 요청할 경우 제출되어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태국 수출선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DOA가 요청할 경우 승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수출선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만 반입하여 선과하여야 한다.
3. 수출선과장 및 그 주변 지역에 선과 과정에서 선별된 폐기 대상 과실 및 기타 병해충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수출선과장은 선과, 포장 및 보관과 관련된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표준작업절차(SOP)를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5. 수출선과장에는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위한 검사실 또는 검사구역이 확보되어야 하며, 수출검역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검사대 및 조명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수출선과장의 등록 절차) ① 태국으로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선과장은 수출농가 목록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 “태국 수출선과장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수출 선과 20일 전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등은 10일 이내에 선과장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태국 수출선과장 승인서”를 발급하고 선과장 및 농가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3호서식 “태국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 “태국 수출 참여농가 등록대장”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태국 수출농가 및 선과장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포장 및 라벨링) ① 생과실은 살아있는 곤충, 흙, 모래 및 잎, 잔가지, 잡초 종자, 식물 잔재물 또는 기타 검역 병해충의

오염 경로가 될 수 있는 식물체가 없는 새 것이고 청결한 포장재로 포장되어야 한다.

- ② 생과실은 병해충 감염 방지 등 검역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 ③ 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1. Product or produce of Korea
2. Name of exporting company
3. Name of fruit
4. Packinghouse code (PHC)
5. Production unit code (PUC)

< 영문 표기 사항 >

1. 한국산 상품 또는 농산물
2. 수출 업체명
3. 과실 명
4. 선과장 등록 번호
5. 과수원 등록 번호

< 국문 번역 >

- ④ 생과실이 개별 상자에 포장되어 수출되는 경우, 각 포장상자마다 “EXPORT TO THAILAND” (태국 수출용)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포장상자가 화물용 컨테이너에 펠릿(pallet)으로 적재되어 수출되는 경우에는 펠릿(pallet)의 4면에 동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생과실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ISPM)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 ① 등록된 선과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별표 1의 태국 측 검역병해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 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다만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 후 재검역될 수 있다.

제9조(수출검역증명서)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The consignment of (품목명) frui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품목명) from Korea to Thailand.”

(“동 (품목명) 생과실 화물은 한국산 (품목명) 생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준비되었음.”)

2.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 화물에만 해당)

제10조(수입검역) ① 해당 화물이 태국 수입지에 도착하면 태국

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수입허가서, 기타 관련 서류 및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수입 검역을 실시한다.

- ② 화물에서 살아있는 곤충, 병징, 쓰레기, 오염 종자, 및 기타 이물질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③ 화물에 대한 샘플은 식물검역관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채취되며, 병해충 발생 여부가 검사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샘플에 대하여 실험실 분류동정 작업을 실시하고, 해당 화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을 보류한다.

- ④ 1000개 미만의 과실 화물의 경우 450개 또는 화물의 100%를 샘플 조사한다. 1000개 이상의 과실 화물의 경우 600개에 대하여 샘플 조사한다.

- ⑤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수입 검역 중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소독 처리하거나 재수출 또는 폐기해야 하고 동 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 ⑥ 별표 1에 명시되지 않고, 검역적으로 잠재적 우려가 있는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에 대하여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소독 처리하거나 재수출 또는 폐기해야 한다. 동 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DOA는 발견된 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동 병해충의 유입 경로 확인을 위해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 ⑦ DOA는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실을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고 동 조치 시 발생하는 비용

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1. 컨테이너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
2.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 또는 교체되어 있거나,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식물 검역증의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
3. 포장 라벨링이 누락되어 있거나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다.

제11조(수출개시 전 현지조사) ① 한국산 생과실의 태국 수출은 DOA가 한국 수출 인증 절차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완료한 이후에만 개시 가능하다. 해당 검사 비용은 한국에서 부담한다.

② 수입 중단 또는 기타 변수 발생 시 DOA는 수입 재개 결정 전 한국의 수출 인증 절차를 검사해야 한다. 해당 검사 비용은 한국에서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선과장 등록 신청서

선과장명	(국문)				
	(영문)				
총면적(㎡)			선과품명		
주요 시설 및 장비	출입구, 창문 등 방충시설 유무	선과기 (선별대)	검사대	비페로몬 예찰트랩 설치유무	침지소독조(ℓ) (*감귤만 해당)
선과장 주소	(국문)				
	(영문)				
대 표 자	주 소	(전화 :)			
	성 명	(국문)	생년월일		
		(영문)			
선과장 관리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저장고번호	면적(㎡)	수용량(M/T)	비 고	
() 생과실의 태국 수출선과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 (품목명) 생과실 수출 참여농가 목록					

[별지 제2호서식]

**북송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선과장 승인서**

[illegible]

승인번호 : 품목명(영문)-지역본부·사무소 코드-일련번호			
신청인 (생산자 조직명)		대 표 자	(국문) (영문)
선과장명	(국문) (영문)	선과장 주소	(국문) (영문)
선과장면적(㎡)		참여농가수(호)	
관리책임자		연락처	
선과장 주소		참여농가 목록	별 첨
「한국산 생과실 8품목의 태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농산물명) 수출선과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 (인)			
붙임: 태국 수출 참여농가 목록 1부			

[별지 제3호서식]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선과장명	선과장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명	면적 (㎡)	참여 농가수 (호)	비고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품목명(영문)-지역본부·사무소 코드-일련번호
(예 : 품목이 사과이고 영남지역본부일 경우 “APPLE-30-○○-○○”)

[별지 제4호서식]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 참여농가 등록대장

연번	농가 번호	참 여 농가명	전화번호	재배지 주소	재배면적 (㎡)	생 산 예상량(톤)	비 고

※ 수출농가 등록번호: 품목명(영문)-지역본부·사무소 코드-선과장 일련번호-일련번호
(예 : 품목이 사과이고 영남지역본부 관할 선과장일 경우 “APPLE-30-○○-○○”)

[별지 제5호서식]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농가 및 선과장 목록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선과장명	선과장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명	면적 (㎡)	참여 농가수 (호)	비고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연번	농가 번호	참 여 농가명	전화번호	재배지 주소	재배면적 (㎡)	생 산 예상량(톤)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과수원(온실) 병해충 예찰·방제 기록부

- ☐ 농 가 명 : (전화번호 :)
- ☐ 농가번호 :
- ☐ 재배지 주소 :
- ☐ 재배지 면적 : ㎡

일련번호	방제일자(월/일)/ 병해충검출일자(월/일)	방제 약제명/ 병해충명	비 고 (잡초 등 오염원 제거 등 위생관리)
	(방제일자)	(방제 약제명)	
	(병해충검출일자)	(병해충명)	

북 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조(적용대상 산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포도(*Vitis vinifera*)생과실(이하 “대미 수출용 포도”라 한다).

제2조(미국의 관심대상병해충)

- 가.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tiferalis*)
- 나.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poecilia ambiguella*)
- 다. 도깨비잎말이나방(*Sparganothis pilleriana*)
- 라. 열매꼭지나방(*Starhmopoda auriferella*)
- 마. 포도애털날개나방(*Nippoptilia vitis*)
- 바.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 사. 기타 미국의 규제병해충

제3조(수출단지 요건)

- 가. 대미 포도 수출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는 『원예전문 생산단지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의해 선정된 원예단지에 포함된 지역으로 직경 4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 되고 재배규모는 20ha이상 되어야 한다.
- 나. 대미 수출용 포도는 착과기에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미국 수출용”이라 표시된 봉지를 씌워 재배하여야 한다.
- 다. 수출단지는 선과기간 동안에 대미 수출용 포도만을 전용으로 선과할 수 있는 선과장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선과장의 선과라인에는 이병과 제거 및 검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선과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과 검사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 수출단지는 선과 전후에 대미 수출용 포도를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마. 신규 수출단지(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장시설)는 수출에 참여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수출단지 선정절차)

가. 신규 수출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재배지역의 시장·군수는 동 요령 제3조(수출단지 요건)를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그 해의 3월말까지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인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서 사본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1/25,000)
- 후보지의 수출과수원 목록
- 각 수출과수원의 면적
- 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약도

나. 수출단지 승인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동 요령 제3조(수출단지 요건)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장조사 결과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검역인력 등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수출단지 승인 여

부를 결정하고, 이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3월 말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현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출단지의 요건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수출 참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바. 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출과수원이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5조(수출단지 취소절차)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선정된 수출단지가 [별표 1]의 각 호에 해당되어 수출단지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출단지 승인 취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사무소장의 수출단지 취소요청에 따라 해당 수출단지의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수출단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예전문생산단지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수출단지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를 취소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배지검역)

가. 재배지검역 신청

대미 수출용 포도 수출단지(또는 선과장) 대표자는 매년 4월 말까지 재배지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이라 한다.)에게 재배지검역을 신청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신규 선정 지역은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인신청으로 재배지검역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나. 재배지검역 실시

상기 ‘가’항의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농가별(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수원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1) 재배지 검역은 재배기간 중 2회 실시하며, 1차 재배지 검역은 과실이 완전히 형성되고 꽃이 없는 시기에 나방류 해충 발생여부에 대하여 중점 검역한다. 2차 재배지 검역은 수확직전에 실시하며 병 발생여부에 대해 중점 검역한다.

(2) 검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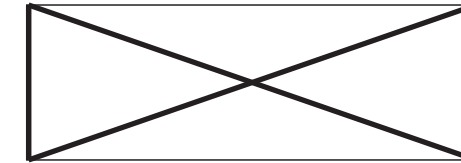
(가) 조사대상 포도나무 수

- 1ha미만의 과수원
 - 재배기간 중 : 20주/1회
 - 수확 직전 : 150주
- 1ha이상의 과수원
 - 재배기간 중 : 30주/1회

- 수확 직전 : 240주

(나) 표본추출 및 검역방법

다음 그림과 같이 8자형의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검역표본을 추출하여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을 검역한다.



다. 검역 결과 조치

- (1) 상기 재배지 검역 과정에서 복숭아명나방,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열매꼭지나방, 포도애털날개나방 및 잣빛무늬병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해당 과수원을 당해연도 수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과수원이 이듬 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발견된 병해충에 대해 방제를 실시하여 박멸시켜야 한다.
- (2)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농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 (3) 최종 재배지검역이 종료된 때에는 과수원별 재배지검역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수출검역) 본 요령에 의거 생산된 대미 수출용 포도는 수확한 후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 선과계획서 제출

대미수출용 포도 생산단지대표자는 과실 선과 1주일 전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출한다. 이 계획서에는 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검역희망일 등 과실검역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출하 및 선과

- (1) 대미 수출용 포도 생산자는 제6조의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를 선과장으로 반입하여 선과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해당 대미 수출용 포도 생산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만이 선과장으로 반입되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 (3) 선과장으로 반입 시에는 포도 봉지가 씌워진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는 포도는 선과장으로서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 (4) 선과장에서 병해충 감염과 열과 등 물리적 피해과를 철저히 선별 제거한다.

다. 수출검역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검역 결과 조치

- (1) 제2조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검사 당일 반입된 당해 과수원의 물량을 불합

격처리하고, 당해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는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미국으로의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 (2)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하도록 조치한다.

제8조(포장 및 보관)

가. 선과가 완료된 포도는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박스에 포장하여야 한다. 부득이 환기구멍이 있는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 후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 시까지 병해충이 침입하지 않도록 포장 즉시 비닐로 덮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포장 박스에는 해당 농가의 코드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코드번호는 스탬프 잉크로 찍거나 농가 코드번호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포장된 포도를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선과된 또는 검역에 합격한 대미 수출용 포도를 보관하는 창고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포도, 또는 타 물품을 함께 보관할 수 없다.

제9조(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검역신청

서를 제출하고, 과실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선적분별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fruit in the shipment was found free from *C. puntiferalis*, *E. ambiguella*, *S. pilleriana*, *S. auriferella*, *M. fructigena*, and *Nippoptilia vitis*.”(이 화물에 있는 과실은 복숭아명나방,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열매꼭지나방, 잣빛무늬병 및 포도애털날개나방에 감염되지 않았음.)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1. 적용대상 산물

캐나다로 수출되는 한국산 포도(*Vitis spp*) 생과실(이하 “캐나다 수출용 포도”라 한다.)

2.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 가. 가루이과(*Aleurolobus vitis*)
- 나.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
- 다. 공각지벌레(*Eulecanium kunoense*)
- 라.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poecilia ambiguella*)
- 마. 검은썩음병(*Guignardia baccae*)
- 바. 이세리아각지벌레(*Icerya purchasi*)
- 사. 잣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 아. 포도애털날개나방(*Nippoptilia vitis*)
- 자. 볼록충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3. 캐나다 수출용 포도 생산 및 재배 요건

- 가. 캐나다 수출용 포도 수출단지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수출검역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 나. 캐나다 수출용 포도는 제2조의 캐나다측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과실 착과기부터 수확할 때까지 봉지를 씌워 재배하여야 하며, 재배기간 중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봉지를 씌워서 재배하지 않은 포도는 별표 1에 따라 메

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소독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재배지검역

가. 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이하 “관리요령”이라 한다)제8조제2항에 따라 재배지 검역신청을 관할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이하“지역본부·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재배지검역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한다.

나. 검역 실시

상기 ‘가’항의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농가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1) 검역 횟수 및 시기 : 수확 전 1회. 검사 시기는 지역별 재배품종의 특성 및 병해충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이 적절히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검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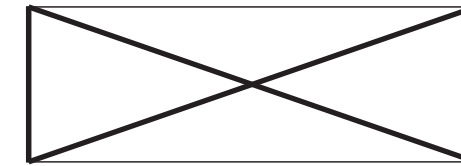
(가) 조사대상 포도나무 수

- 1ha미만의 과수원: 150주
- 1ha이상의 과수원: 240주

(나) 표본추출 및 검역방법

다음 그림과 같이 8자형의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검역표본을 추출하여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을

검사한다.



다. 검역 결과 조치

- (1) 상기 재배지 검역과정에서 제2조의 캐나다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지역 본부·사무소장은 해당 과수원을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 하고, 이를 수출단지 대표에게 통보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과수원이 이듬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병해충에 대해 방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2조의 캐나다측 우려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 (2)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농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3) 재배지검역이 종료된 때에는 관리요령 제8조제6항에 따라 과수원별 재배지검역 결과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5. 과실 선과 및 검역

가. 선과 전 관리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수출선과장을 관리

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과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나. 선과

- (1) 수출단지 선과장의 지정 및 관리는 관리요령 제11조에 따라 실시한다.

(2) 포도는 선과장 반입시 봉지가 씌워진 채로 반입되어야 하며, 봉지가 쓰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는 포도를 선과장에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별표1에 따라 소독 처리한 포도는 예외로 한다.

다. 검역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과실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라. 검역 결과 조치

- (1) 제2조의 캐나다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검사 당일 반입된 당해 과수원의 물량을 불합격 처리하고, 당해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는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캐나다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 (2) 캐나다측 우려병해충 이외의 병해충, 흙, 잎 및 식물잔재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한다.

6. 포장 및 보관

- 가. 선과가 완료된 포도는 관리요령 제12조에 따라 포장 및 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선과된 또는 검역에 합격한 캐나다 수출용 포도를 보관하는 창고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포도, 또는 타 물품을

함께 보관할 수 없다.

7. 수출검역 신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가. 수출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검역신청을 하여야한다.
- 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검역을 실시하여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 다. 별표 1에 따라 소독 처리된 화물에 대해서는 소독처리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처리 기준

가. 봉지를 씌워서 재배하지 않은 포도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로 훈증소독처리 하면 수출할 수 있다.

온도		MB 투입량		유효최소가스농도			
				투약후 30분 후		투약후 2시간 후	
℃	℉	g/m ³	oz/1000ft ³	g/m ³	oz/ft ³	g/m ³	oz/ft ³
27 이상	80 이상	24	24	19	19	14	14
21-26	70-79	32	32	26	26	19	19
16-20	60-69	40	40	32	32	24	24
10-15	50-59	48	48	38	38	29	29
5-9	41-49	64	64	48	48	38	38

나. 훈증소독처리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수출입식물검역소 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준수하여 식물검역 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한다.

오 세 아 니 아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식물) ① 한국에서 생산되어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식용 포도의 생과실(*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 이하 ‘포도’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식용 포도”라 함은 상업적으로 생산된 줄기, 잎, 뿌리 등을 제외한 포도의 송이만을 말한다.

제3조(포도 병해충) ① 뉴질랜드가 한국산 포도와 관련하여 병해충 관리를 요구하는 우려병해충과 검역병해충의 목록은 별표1.과 같다.

② “우려병해충”이라 함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에서 고위험 병해충으로 평가되어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취하도록 요구하며 식물검역증명서를 통해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③ “검역병해충”이라 함은 수출검역 및 도착지검역에서 검출될 경우 제16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검역조치를 취해야 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과수원 및 시설등록) ① 뉴질랜드로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선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말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지역본부”라 한다)에 제출하고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본부는 제6조의 선과장 요건을 확인하여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선과장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한다.

③ 지역본부는 신규 선과장의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서”를 발급하고, 시설의 변경 및 소유자 변경 등 재발급 사유의 발생시 원본을 회수하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는 매년 등록된 과수원(농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출농가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선과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에 따라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를 소독 하고자하는 시설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의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검역본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지역본부는 매년 선과개시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을 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수원 요건) ① 과수원에서는 지역본부 검역관의 지도에 따라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과수원에서는 포도 재배기간 동안 별표1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병해충 관리를 실시하고 지역본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병해충 관리는 우려병해충에 대한 예찰, 화학적방제, 생물학적방제 및 경종적방제를 포함한다.

④ 화학적방제는 저항성 개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생물학적방제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⑤ 과수원에서는 잡초방제 및 전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에 감염된 포도나무 및 식물체 잔재는 폐기하여야 한다.

⑥ 봉지씌운 날짜 및 방제기록은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방제기

록에는 재배기간 중 사용된 약제이름, 처리자명, 적용날짜 및 적용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과수원에서는 잣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 낙과된 과실, 봉지가 없거나 파손된 과실, 땅과 접촉된 과실은 과수원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⑨ 등록된 모든 과수원은 제11조에 따라 지역본부 검역관의 재배지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선과장의 요건) ①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를 선과하고자 하는 선과장 및 소독시설은 출입구 및 창문에 에어커튼, 방충망 등 적절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선과장에는 포장 후 또는 수출검역 후 병해충에 재 감염되지 않도록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격리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선과장에는 포도를 선별할 수 있는 선과시설과 적절한 조명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선과장에는 조명이 갖추어진 검사대 및 수출검역 장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 선과장에는 선과전문가의 병해충 검사를 위한 확대경 등 적절한 검사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⑥ 선과장에서는 사과식초트랩, 사과식초와인트랩 등을 이용하여 선과장내의 벚초파리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선과장은 선과기간에는 뉴질랜드 수출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 수출용 또는 내수용 포도의 선과 후에는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선과장 대표는 1인 이상 선과전문가를 지정하고, 선과전문가

는 매년 별표1의 우려병해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①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본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수원 및 선과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출검역 또는 도착지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 또는 선과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는 등록이 취소된 선과장의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봉지 씌우기) ① 과수원에서는 포도 알의 지름이 대략 8~10mm 시기에 봉지를 씌워야 한다.

② 봉지는 방수 및 방광(rain and light proof) 재질이어야 한다.

③ 봉지는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벗기지 않아야 한다.

④ 봉지를 씌운 날짜는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예찰트랩조사) ① 지역본부는 등록된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생산지역에 대하여 “외래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의 절차에 따라 과실판리에 대한 예찰트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는 과실판리가 검출되면 “외래병해충 공적방제 실시요령”의 절차에 따라 박멸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훈증소독) ① 본 요령에 따라 재배지검사, 예찰조사, 봉지 씌우기, 선과전문가의 선과검사 등 뉴질랜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포도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을 실시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다.

②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의 소독은 아래 표1에 나열된 소독처리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표1.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의 메틸브로마이드 소독처리 기준

약제농도	처리시간	처리온도
32g/m ³	2시간	22℃ 및 그 이상
40g/m ³	2시간	17-22℃
48g/m ³	2시간	12-17℃

③ 소독은 전체 공간(챔버 또는 천막)에 대하여 화물 용적이 50% 또는 그 이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④ 소독 처리시설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화물의 생산지(생산 과수원)

나. “뉴질랜드” 표지 및 다른 화물과의 격리

다. 처리절차, 처리화물에 대한 일련번호

라. 소독처리 기록

마. 소독장비에 대한 보정, 보정주기, 보정 처리자

바. 소독 후 안전조치 사항

사. 소독처리 화물과 미 처리 화물의 분리보관 여부

아. 장치>Loading) 및 관리감독 상황

⑤ 소독처리 기록이 소독처리 요건에 적합할 경우 식물검역관 또는 지역본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소독처리를 종료시킬 수 있다.

⑥ 소독처리가 실패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화물은 재소독 처리하여야 한다.

⑦ 소독이 중단된 이후 상황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확인되면 소독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시점부터 기록장치로부터 정보를 다시 수집하여야 한다.

⑧ 본 요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소독처리 방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의 절차에 따른다.

- ⑨ 소독처리 기록은 식물검역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뉴질랜드의 확인요청에 대비하여 지역본부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재배지검역) ① 지역본부는 등록된 과수원에 대하여 과실 생성기부터 봉지를 제거하기 이전까지 매월 1회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식물검역관은 잎과 과실을 포함한 포도나무에 대하여 별표1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식물검역관은 뉴질랜드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병해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식물검역관은 봉지씌운 날짜 및 방제기록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배지검역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재배지검역에 대한 조치) ① 재배지검역 결과 잣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증상이 발견된 과수원은 뉴질랜드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② 차응애(*Tetranychus kanzawai*)의 경우 5% 이상(잎 샘플 100개 중 5개 이상 감염) 감염된 과수원은 뉴질랜드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③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1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면 약제방제 등 적절한 병해충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지역본부는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선과개시 이전에 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선과) ① 선과장에서는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중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과실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 ② 선과장에서는 기형과실, 물리적 피해과실,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 및 송이속 잔가지, 잡초종자, 기타 오염물질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③ 선과전문가는 선과가 진행되는 동안 확대경 등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별표1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선과전문가는 선과검사 결과 차응애, 오이충채벌레, 복숭아명나방, 애모무늬잎말이나방, 열매꼭지나방, 굴각지벌레가 검출되면 해당 화물을 뉴질랜드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⑤ 불합격된 화물 및 잔재물 등은 신속하게 제거되어 수출용 화물과 분리되어야 한다.
- ⑥ 일몰 이후에는 선과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 및 라벨링) ①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의 포장재는 깨끗하고, 생리적으로 활성이 없는 물질 또는 인공합성 물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 ②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 가. 선과장 등록번호
- 나. 과수원 등록번호
- 다. 선과일자

제15조(보관, 운송 및 선적) ① 뉴질랜드로 수출될 포도는 다른 국가 또는 내수용 화물과 섞이거나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0조에 따라 소독처리된 화물은 소독처리 되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창고의 출입문은 선적 절차가 준비될 때까지 봉인되어야 한다.
- ③ 선과 및 소독이 완료된 포도는 보관창고로 이동시에 재감염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선적 전 컨테이너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환기구는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는 검역관의 감독 하에 선적과 봉인작업을 실시하고, 봉인번호(Seal No.)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6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이전에 수출 대상 화물에 대하여 아래 표2에 따라 샘플을 추출하여 육안으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2.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수출검역 샘플링 기준 (단위: 송이)

검사단위의 규모	샘플 수량
0 - 1,000	450
1,001 - 2,000	520
2,001 - 3,000	550
3,001 - 4,000	560
4,001 - 5,000	570
5,001 또는 그 이상	600

② 수출검역결과 뉴질랜드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화물은 제10조에 따라 소독처리 하거나 뉴질랜드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육안 검출이 불가능한 병해충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④ 지역본부는 수출검역결과 별표1.에 나열되지 않은 병해충이 검출되었을 경우 검역본부에 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는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검역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과수원 및 선과장 감사) ① 검역본부는 뉴질랜드와 합의

된 요건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매년 수출과수원과 선과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요령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뉴질랜드 농림부는 수출이 개시된 이후 18개월 이내에 검역요건의 이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추가적인 감사는 정기적으로 시행하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국제기준에 따라 검역본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8조(식물검역증명서) ① 뉴질랜드 수출을 위한 모든 요건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다고 확인되고,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의 발견이 없는 경우 지역본부는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가. 과수원 등록번호

나. 선과장 등록번호

다. 컨테이너 봉인번호

라. 부기사항

(i) “The table grapes in this consignment have undergone pest control activities that are effective against *Adoxophyes orana*, *Chrysomphalus dictyospermi*, *Conogethes punctiferalis*, *Drosophila suzukii*, *Monilinia fructigena*, *Stathmopoda auriferella*, *Tetranychus kanzawai* and *Thrips palmi* in accordance with the Official Assurance Programme.”

(본 포도 화물은 공식 확인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수행하였음)

(ii) “The Republic of Korea is free of fruit fly species of economic significance associated with fresh table grapes verified in accordance

with the Official Assurance Programme.”

(대한민국은 공식 절차에 따라 포도와 관련된 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실판리가 없음이 증명되었음)

마. 소독처리 세부사항(소독처리 한 경우에 한함)

③ 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나누어지거나 포장이 변경된 경우 재수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의 제공) ① 검역본부는 등록된 선과장 목록, 소독처리 시설 목록, 수출검역 기록을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는 뉴질랜드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재배지검사, 예찰 및 방제사항을 뉴질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는 검역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소독처리 기록을 뉴질랜드 확인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검역본부는 과실판리가 검출된 경우 뉴질랜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실판리에 대한 예찰 및 박멸 프로그램 중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어도 뉴질랜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도착지 검역) ① 뉴질랜드 도착항에서는 뉴질랜드 검역관만이 봉인을 개방할 수 있다.

② 봉인이 파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한국과 뉴질랜드의 협의가 완료될 때 까지 통관이 보류된다.

③ 화물이 도착하면 뉴질랜드 농림부는 “뉴질랜드의 생과실 및 채소류 수입검역 기준”에 따라 샘플 검역을 실시한다.

④ 검역병해충이나 식물체의 잔재물이 검출되거나 포장에 부착되었을 경우와 소독처리가 실패했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재선별

나. 소독처리(적절한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다. 재수출(반송)

라. 폐기

마. 수출의 일시적 중단(수출 전 특별한 조치사항이 필요한 경우)

⑤ 수출의 중단조치는 검출된 병해충의 중요도에 따라 과수원, 선과장, 지역 또는 국가단위로 중단될 수 있다.

⑥ 수출의 중단은 부적합 사항의 원인이 밝혀지고 적절한 조치의 이행이 확인될 때 까지 계속된다.

제21조(평가되지 않은 병해충) 수출검역 및 재배지검역에서 별표1의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병해충이 검출 또는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과 뉴질랜드는 협의를 통하여 해당 병해충에 대한 규제지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요건의 재검토) ① 본 요건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중 한 국가의 요청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② 메틸브로마이드 소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면 뉴질랜드는 동등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벚초파리에 대한 무발생 증명을 위해서는 검역본부에서 예찰조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뉴질랜드에 제안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양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예찰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년간 벚초파리가 검출되지 않으면 뉴질랜드는 벚초파리 무발생 지역 인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농림수산검역본부 고시 제2012-99호)은 폐지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6-61호, 2016.3.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한국산 포도의 병해충 목록

구 분	학 명	일 반 명	조치등급
우 려 병 해 충	<i>Guignardia bidwellii</i>	검은썩음병	3
	<i>Monilinia fructigena</i>	잣빛무늬병	3
	<i>Adoxophyes orana</i>	애모무늬잎말이나방	2a
	<i>Chysomphalus dictyospermi</i>	굴각지벌레	2a
	<i>Conogethes punctiferalis</i>	복숭아명나방	2a
	<i>Drosophila suzukii</i>	벚초파리	2a
	<i>Stathmopoda auriferella</i>	열매꼭지나방	2a
	<i>Thrips palmi</i>	오이충채벌레	2a
	<i>Tetranychus kanzawai</i>	차응애	2a
검 역 병 해 충	<i>Pestalotiopsis menezesiana</i>	잎마름병	2
	<i>Pilidella diplodiella</i>	흰빛썩음병	2
	<i>Apolygus lucorum</i>	초록장님노린재	2
	<i>Apolygus spinolae</i>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	2
	<i>Aspidiotus destructor</i>	유리각지벌레	2
	<i>Diaphania indica</i>	목화바둑명나방	2
	<i>Eupoecilia ambiguella</i>	버찌가는잎말이나방	2
	<i>Harmonia axyridis</i>	무당벌레	2
	<i>Nippoptilia vitis</i>	포도애털날개나방	2
	<i>Orthotylus flavosparsus</i>	명아주장님노린재	2
	<i>Planococcus kraunhiae</i>	온실가루각지벌레	2
	<i>Pseudaulacaspis pentagona</i>	뽕나무각지벌레	2
	<i>Pseudococcus comstocki</i>	가루각지벌레	2
	<i>Scitothrips dorsalis</i>	볼록충채벌레	2
	<i>Sparganothis pilleriana</i>	도깨비잎말이나방	2
	<i>Thrips hawaiiensis</i>	하와이충채벌레	2

※ 병해충 등급별 도착지 검출 시 조치사항

등급 1. : 혼입물 제거 - 흙 또는 식물의 일부분

등급 2. : 소독, 재선별, 재수출 또는 폐기

등급 2a: 소독, 재수출 또는 폐기, 수출 잠정중단 조치

등급 3. : 재수출 또는 폐기, 수출 잠정중단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 신청서

선과장명	(국문)			
	(영문)			
총면적(m²)			선과 과실명	
시 설	검역대, 조명 장치 유무	출입구 방충시설 유무	창문, 환기구 방충시설 유무	기 타
선과장 소재지	(국문)			
	(영문)			
소 유 자	주 소	(전화:)		
	성 명	(국문)	생년월일	
		(영문)		
선과 전문가	성 명	(국문)	전화번호	
		(영문)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창고번호	면 적(m²)	수용량(톤)	비 고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 2013-88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1. 선과장 및 참여농가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1부 2. 참여농가 내역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서

선과장 등록번호 :				
선과장명	(국문)			
	(영문)			
총면적(m²)		선 과 과실명		
선과장 소재지	(국문)			
	(영문)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국문)	생년월일	
		(영문)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창고번호	면 적(m²)	수 용 량	비 고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 2013-88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뉴질랜드 수출용 포도 선과장으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포도 수출농가 코드번호 부여서

품 명 :	수출국명 : 뉴질랜드
선과장 :	주 소 :
생산자조직명 :	대 표 자 :

[illegible][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 가로서식

재배지검역 결과 보고서 (월)

품 명 :
선과장 :
생산자조직명 :

수출국명 : 뉴질랜드
주 소 :
대 표 자 :

코 드 번 호	농 가 명	배 적 (m²)	지 운 일 자	검 역 일 자	재배지검역 결과 ^{주1)}				검 역 관	기 타 ^{주2)}
					병해충발생상황		병해충 관 리 상 황	방제기록		
					우려 병해충	관 리 병해충				
					병해충명 (발생정도)	병해충명 (발생정도)	적합 또는 부적합	처리일자, 약제명, 처리농도, 처리자		

주1) 재배지검역 결과 : 발생정도는 상, 중, 하 또는 (차용애의 경우)%로 작성
주2) 기타사항 : 재배지검역결과 조치사항, 잡초방제 등 기타 특이사항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등록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

(수출국명 : 뉴질랜드)

과수원 등록번호	생산지역 (관할구역)	생산자명	과 수 원 주 소	면적(ha)
선과장 등록번호	관할구역	선과장명	주 소	규모(㎡)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조(적용대상 식물)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호주로 수출되는 식용 포도 생과실(*Vitis spp.*)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지역) 이 요령은 한국의 모든 상업적 포도 생산지역에서 생산된 호주 수출용 식용 포도 생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호주의 검역병해충) 한국산 포도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우려하는 검역병해충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무당벌레(Halequin ladybird, *Harmonia axyridis*)
2. 쿵퉁땡이(Scarab beetle, *Popillia mutans*)
3. 녹색쿵퉁땡이(Chinese rose beetle, *Popillia quadriguttata*)
4. 뱀초파리(Spotted winged drosophila, *Drosophila suzukii*)
5. 차응애(Kanzawa spider mite, *Tetranychus kanzawai*)
6. 가루깍지벌레(Comstock mealybug, *Pseudococcus comstocki*)
7. 온실가루깍지벌레(Japanese mealybug, *Planococcus kraunhiae*)
8.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ropean grape berry moth, *Eupoecilia ambiguella*)
9. 도깨비잎말이나방(Leaf rolling tortrix, *Sparganothis pilleriana*)
10. 열매꼭지나방(Apple heliodinid, *Stathmopoda auriferella*)
11. 꽃노랑총채벌레(Wester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occidentalis*)
12. 포도뿌리혹벌레(Grape phylloxera, *Daktulosphaira vitifoliae*)
13. 포도검은썩음병(Grape cluster black rot, *Physalospora baccae*)
14. 포도잎녹병(Grapevine leaf rust, *Phakopsora euwitis*)

제4조(병해충 관리) ① 뱀초파리는 포도 품종별로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캠벨얼리 품종은 재배지 검역, 트랩조사, 수출검역 강화를 포함하는 별표1의 시스템즈 어프로치(systems approach: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을 종합한 것)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2. 캠벨얼리 이외의 포도 품종은 선적 전에 SO₂/CO₂ 훈증(과실 내부 온도가 15.6℃이상에서 1% SO₂ 가스와 6% CO₂ 가스로 30분간 훈증) 후 -0.5℃±0.5℃에서 최소 6일간 저온처리 되어야 하며, 세부 지침은 별표2를 따른다.

② 뱀초파리 이외의 호주의 검역병해충은 제5조 제6항 가목의 과수원 요건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 ① 호주로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선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말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선과장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선과장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매년 등록된 과수원(농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출농가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신규 선과장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서”를 발급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매년 농가 및 선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배요건 및 선과요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매년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수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과수원에서는 지역본부 검역관의 지도에 따라 제8조의 봉지 씌우기 요건 등 호주 수출검역 요건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나. 과수원에서는 포도 재배 기간 동안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우수농산물(GAP) 또는 통합병해충방제(IPM) 적용 등 적절한 방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방제프로그램은 병해충방제와 포장위생이 통합된 것으로서 지역본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등록된 과수원에서는 제9조에 따라 재배지검역이 실시되어야 한다.

라. 과수원에서는 포도검은썩음병(*P. baccae*)과 포도잎녹병(*P. ewitis*)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마. 과수원에서는 봉지를 씌운 날짜 및 약제방제 상황이 기록되고 해당 기록이 보존되어야 한다.

바. 과수원의 바닥은 피복되거나 잡초가 방제되어야 하며, 병해충에 감염된 포도나무, 잔가지, 전정된 가지 등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2. 선과장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호주 수출용 포도를 선과하고자 하는 선과장 및 소독시설은 출입구 및 창문에 방충망 등 적절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나. 선과장에는 포도를 선별할 수 있는 선과, 보관, 격리시설과 적절한 조명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선과장 및 소독시설에는 검사대 및 조명이 갖추어진 수출검역 장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라. 선과장에는 수출검역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조명이 갖추어진 검사대가 구비되어야 한다.

마. 선과장에서는 벚초파리 및 그밖에 날아다니는 검역해충에 대하여 호주 정부가 승인한 적절한 트랩(사과식초트랩 또는 사과식초와인트랩)을 이용한 과실이 들어오는 부분과 선과장내에서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선과중에는 선과장내 트랩이 매일 확인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기록 보관되어야 한다. 벚초파리가 발견될 경우 선과중인 lot는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

바. 선과장에서는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이 실시되어야 한다. 선과라인은 수출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내수용 포도 선과 후에는 소독이 실시되어야 한다.

제6조(소독시설의 등록) 호주 수출용 포도를 소독하고자 하는 시설은 모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등록되어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①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본부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수원 및 선과장에 대하여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② 수출검사 또는 도착지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 또는 선과장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③ 지역본부장은 등록이 취소된 선과장의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붕지 씌우기) ① 과수원에서는 포도 알의 지름이 대략 8~10mm 시기에 붕지가 씌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어린 포도가 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약제 살포 등은 붕지 씌우기 이전에 적용되어야 한다.

- ③ 붕지를 씌운 날짜는 기록 보관되어야 하며, 호주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 ④ 붕지는 수확이 완료될 때 까지 벗겨서는 안 되며, 병해충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재배지검역) ① 지역본부장은 등록된 과수원에 대하여 붕지 씌우기 전후부터 수확 직전까지 매월 1회 호주의 검역병해충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식물검역관은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

1. 1ha 미만의 과수원 : 20주/회
2. 1ha 이상의 과수원 : 30주/회
3. 표본의 추출은 8자 형으로 무작위로 추출한다.

- ③ 지역본부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배지 검역에 대한 조치) ① 재배지 검역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이 검출된 과수원에 대해서는 당해 호주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② 재배지 검역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이에 대하여 약제방제가 실시되어야 하고 농가에서는 약제방제 사실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약제방제 기록은 호주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선과) ① 선과장에서는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중 붕지가 파손되지 않은 과실만 반입되어야 한다.

- ② 호주 수출용 포도는 검역병해충 및 잎, 잔재물, 흙, 잡초종자 등과 같은 규제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 ③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는 내수용 또는 다른 나라로 수출될 화물과 동시에 선과되도록 하지 말아야 하며,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 작업 이전에 선과 라인이 청소되어야 한다.

- ④ 일몰 이후에는 선과 작업을 할 수 없다.

제12조(포장 및 라벨링) ① 호주 수출용 포도는 병해충 운반체가 될 수 있는 가공되지 않은 물질로 포장되지 않아야 한다.

- ②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모든 포장 상자에 아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1. 한국산
2. 수출자(또는 트레이드마크)
3. 과실종류(식용 포도)
4. 과수원 등록번호
5. 선과장 등록번호
6. 선과일자
7. 수입국(목적지)

- ③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외부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직경 0.98mm이하 두께 0.16mm이상의 망으로 씌워져야 한다. 선박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봉인할 경우 각 포장에 봉인되지 않아도 된다.

④ 모든 포장 상자에는 유황패드(가)가 삽입되어야 한다. 유황패드는 유효성분(SO₂)이 97%이상인 등록된 상품으로 비닐 포장 내부에 포장되어야 한다.

제13조(보관 및 운송) ① 호주로 수출될 포도는 다른 국가 또는 내수용 화물과 섞이거나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② 포장이 완료된 포도는 저장 및 운송기간 동안 상태의 변동 없이 검역적 완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4조(수출검역) ① 지역본부장은 수출검역을 통하여 각 화물이 호주 수출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생산 및 관리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각 화물에 대하여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 포도송이를 대상으로 검역병해충 및 규제물질의 부착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 또는 벚초파리가 검출되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포도가 생산된 과수원은 나머지 수출시즌 동안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

④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및 열매꼭지나방이 검출되면 해당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⑤ 제14조 제③항 또는 제④항에서 지정한 병해충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다만, 해당 화물은 메틸브로마이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검역될 수 있다.

제15조(호주 농업·수자원부의 현지검역, 최초 시즌) ① 최초 수출시즌에는 현지검역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 이후, 수출실적을 검토하여 한국과 호주는 지역단위로 현지검역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호주 농업·수자원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는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② 호주검역관은 현지검역 동안 수출검역 전반, 과수원, 선과장 및 재배지검역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현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호주에서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제16조(식물검역증명서) ①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발견사항이 없는 경우 지역본부장은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1. 과수원등록번호와 선과장 등록번호(또는 선과장명)
2. 부기사항 : “이 화물은 호주의 한국산 포도 수입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결과 검역병해충 및 규제물질에 감염되지 않았음”

가. 화물이 SO₂/CO₂ 훈증 후 저온 처리되었을 경우 “이 화물은 저온 처리되었음” - 처리 시설명, 처리 완료 일자, 저온처리 중 과육 온도, 저온처리 기간이 부기되어야 한다.

나. 캠벨얼리 품종을 벚초파리 시스템즈 어프로치로 재배하였을 경우 “이 과일은 벚초파리 관리를 위한 시스템즈 어프로치 요건에 맞게 재배되었음”이 부기되어야 한다.

3.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

4. 소독처리 세부사항(소독처리 한 경우에 한함)

제17조(정보의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호주 농업·수자원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과 재배지검역 결과를 호주 농업·수자원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도착지 검역) ① 현지검역을 실시한 화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물리적인 확인만을 실시한다.

1. 한국에서 현지검역을 실시한 화물에 대해서는 호주 도착 시 일반적인 서류 확인을 실시한다.
2.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되거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해명과 호주의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화물은 통관이 보류된다. 이 경우 화물은 재수출, 폐기 또는 소독처리 될 수 있으며 호주는 조치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호주에서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1. 현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 심사 및 생과실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
2. 도착지 검역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입자는 화물을 재수출, 폐기 또는 소독처리(방법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다.
3. 화물이 지속적으로 불합격되면, 호주는 한국의 병해충 관리시스템 및 시정조치가 적절히 취해졌는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할 권한을 가진다.
4.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검역적 지위 및 검역조치의 필요성 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우려병해충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특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된 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현행 요건이 적합한지

에 대한 재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

6.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 및 벚초파리가 검출되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해당 포도가 생산된 과수원은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에서 제외된다.

7.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및 열매꼭지나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된다.

8. 제18조 제②항 제6호 또는 제7호에서 지정한 병해충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된다. 다만, 해당 화물은 메틸브로마이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검역할 수 있다.

9. 살아있는 병해충이나 규제물질이 검출될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재수출(반송 또는 제3국 수출)

나. 소독처리(소독 방법이 있는 경우) 및 재검역

다. 폐기

제19조(평가되지 않은 병해충) ① 수출검역 및 도착지 검역에서 분류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검역적 지위 결정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험평가 되지 않은 병해충이 발견되면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요건의 재검토) ① 한국에서 병해충 및 식물위생 상황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수입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한국의 포도에서 호주가 우려할 만한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

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즉시 호주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 신청서

선과장명	(국문)			
	(영문)			
총면적(m²)			선과 과실명	
시 설	검사조명 장치 유무	출입구 방충시설 유무	창문, 환기구 방충시설 유무	기 타
선과장 소재지	(국문)			
	(영문)			
소 유 자	주 소	(전화:)		
	성 명	(국문) (영문)	생년월일	
선과 전문가	성 명	(국문) (영문)	전화번호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창고번호	면 적(m²)	수 용 량
				비 고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30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1. 선과장 도면 1부 2. 참여농가 내역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서

선과장 등록번호 :				
선과장명	(국문)			
	(영문)			
총면적(m ²)		선과 과실명		
선과장 소재지	(국문)			
	(영문)			
소유자	주 소			
	성 명	(국문)	생년월일	
	(영문)			
선과 전문가	성 명	(국문)		
		(영문)		
저온저장고 또는 밀폐저장고	창고번호	면 적(m ²)	수 용 량	비 고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30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장으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장 등록대장

□ 지역본부(사무소)

선과장 코드번호	등록 일자	선과 품목	선과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소유자명	선과 전문가명	총면적 (m ²)	비고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영명)	(영명)	(영명)	(영명)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재배지 검역 결과 보고서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농가등록번호	생산자명	주소					면적(ha)
대상 병해충		5월	6월	7월	8월	9월	
<i>Physalospora baccae</i> * (포도검은썩음병)	검역일자						
	감염주수						
<i>Phakopsora euvitis</i> * (포도잎녹병)	검역일자						
	감염주수						
<i>Daktulosphaira vitifoliae</i> * (포도뿌리혹벌레)	검역일자						
	감염주수						
<i>Drosophila suzukii</i> (벚초파리)	검역일자						
	감염주수						
<i>Planococcus kraunhiae</i> (온실가루각지벌레)	검역일자						
	감염주수						
<i>Pseudococcus comstocki</i> (가루각지벌레)	검역일자						
	감염주수						
<i>Eupoecilia ambiguella</i> (버찌가는잎말이나방)	검역일자						
	감염주수						
<i>Sparganothis pilleriana</i> (도깨비잎말이나방)	검역일자						
	감염주수						
<i>Stathmopoda auriferella</i> (열매꼭지나방)	검역일자						
	감염주수						
<i>Frankliniella occidentalis</i> (꽃노랑총채벌레)	검역일자						
	감염주수						
<i>Tetranychus kanzawai</i> (차응애)	검역일자						
	감염주수						
<i>Harmonia axyridis</i> (무당벌레)	검역일자						
	감염주수						
<i>Popilia mutans</i> (풍뎅이)	검역일자						
	감염주수						
<i>Popilia quadriguttata</i> (풍뎅이)	검역일자						
	감염주수						
약제방제 상황	방제일자 (사용약제)						
봉지를 씌운 날짜:		기타 발견된 병해충:					

포도 수출연구사업단 ≪ 93

[별지 제6호 서식]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

과수원 등록번호	생산지역 (관할구역)	생산자명	주 소	면적(ha)
선과장 등록번호	관할구역	선과장명	주 소	규모(m ²)

[별표 1]

캠벨얼리 품종에 대한 벚초파리 시스템즈 어프로치(systems approach)

이 시스템즈 어프로치는 캠벨얼리 포도 품종에 적용한다.

1. 수확 전 조치

가.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과수원과 선과장은 매년 지역본부에 등록해야하며 지역본부장은 등록된 과수원과 선과장의 호주 수입 요건 충족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나. 농가와 선과 전문가 교육

매년 시즌이 시작될 때 지역본부장은 벚초파리에 의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가와 선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다. 재배지 검역

지역본부장은 등록된 과수원에 대해 최소 수확 2주전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매주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도록 한다. 식물검역관은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포도 과실에 대하여 재배지 검역을 실시한다.

- 1) 면적 1ha 미만의 과수원: 20주
- 2) 면적 1ha 이상의 과수원: 30주

표본의 추출은 8자형으로 무작위로 추출하고 검역결과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검역결과 봉지를 씌운 과일에서 벚초파리에 의한 피해가 확인된 과수원은 해당 시즌 호주 수

출에서 제외된다.

라. 재배지 모니터링

벚초파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수원 내에 벚초파리를 초기에 감지해내고 방제를 통해 수확시기까지 과수원에서의 벚초파리 밀도가 가능한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과수원 내 식초/와인트랩은 다음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 1) 면적 0.5ha 이하의 과수원: 2개
 - 2) 면적 0.5ha를 초과하는 과수원의 경우 초과 0.5ha 당 추가 트랩 1개씩 설치
- 예) 과수원 면적 0.5ha_{초과}~1ha_{이하}: 3개, 1ha_{초과}~1.5ha_{이하}: 4개, 1.5ha_{초과}~2ha_{이하}: 5개

최소 수확 4주전에 식초/와인 트랩을 과수원 안에 설치하고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매주 확인해야하며 수확 전 최소한 연속 3회는 확인이 이루어져야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 1) 농약 사용 가능 시기: 트랩에서 벚초파리가 검출되면 등록된 농약으로 방제를 실시하여야한다.
- 2) 농약 사용 불가능 시기: 매주 트랩을 확인하고 확인 시 트랩에서 검출된 벚초파리 수가 트랩 당 평균 10마리 이상일 때 해당 과수원은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된다.

마. 농약 사용

포도 재배농민은 봉지 씌우기 전과 벚초파리가 검출될 경우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여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과수원 위생

벚초파리 밀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중과 수확 후에도 과수원내의 상처과나 낙과를 제거한다.

사. 봉지 씌우기

과수원에서는 포도 알의 지름이 대략 8~10mm 시기에 봉지를 씌워야한다. 어린 포도가 벚초파리에 감염되지 않도록 봉지 씌우기 이전에 약제 살포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손상된 봉지는 교체한다.

2. 수확 방법

포도송이는 봉지를 씌운 채로 수확하고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건전한 송이를 골라서 수확한다.

3. 선과장 조치

매 시즌 시작 때 선과장은 청결하고 병해충의 감염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야하며, 선과중에는 매일 청소하여야 한다. 호주 수출 선과 작업 전에 선과 라인을 청소하여야 한다. 상처과나 선과중에 제거된 포도는 당일 선과 종료 후에 선과장에서 치워야 한다.

가. 선과장내 트랩

호주 수출 선과작업 중에 선과장 내부에는 최소 1개의 트랩이 설치되어야하며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벚초파리가 트랩에서 검출될 경우 해당 lot은 호주 수출이 제외되며, 다음 호주 수출 선과전에 벚초파리가 검출된 선과장 구역은 소독되어야 한다.

나. 선과

등록된 과수원에서 재배된 과일만을 선과하여야 한다. 선과중에 상처과와 병해충 감염의 흔적이 있는 포도는 제거하기 전에 10배 확대경으로 벚초파리 감염여부를 확인한다. 벚초파리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lot은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

다. 포장

포장 표기사항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다. 포장상자에 환기구멍이 있는 경우 벚초파리 성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직경 0.98mm이하의 망으로 씌워야하며, 상자 내부에 비닐포장(구멍 0.98mm미만)을 하는 경우에는 망을 씌우지 않아도 된다.

라. 보관

호주로 수출될 포도는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마. 강화된 식물 검역

수출검역 시 검사 수량(lot나 화물당 600송이 검사) 중 일부 송이(3kg)는 10배 확대경으로 검사하여 벚초파리의 감염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벚초파리가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되고 해당 과수원은 당해시즌 수출에서 제외된다. 호주 측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원인 규명을 실시한다.

[별표 2]

선적 전 SO₂/CO₂ 훈증 후 저온처리 세부 지침

벚초파리 시스템즈 어프로치로 관리된 캠벨얼리 이외의 포도 품종에 적용한다.

1. 선적 전 SO₂/CO₂ 훈증

포장된 모든 포도는 선적 전에 6% 이산화탄소(CO₂) 1% 이산화황(SO₂)으로 30분간 훈증 처리하여야 한다. 강제 공기 주입(기계식 공기 주입)으로 과실내부 온도를 15.6℃(60°F) 이상으로 올린다. 훈증실의 적재율은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SO₂/CO₂ 훈증은 저온처리와 검역 전에 실시하고 지역본부의 감독을 받아야한다. 식물검역관은 일반적인 훈증 가스 농도 측정기준에 따라 SO₂/CO₂ 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훈증 사항은 식물검역증명서의 소독처리란에 부기한다.

2. 저온처리- SO₂/CO₂ 훈증 후에 선적 전 또는 이동 중 저온처리

과실내부온도가 -0.5℃±0.5℃에서 최소 6일간 저온처리가 지속되어야 한다. 저온처리는 기준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적 전이나 이동 중에 실시할 수 있다. SO₂/CO₂ 훈증이 끝난 후 바로 예냉 처리를 해야 한다. 저온처리는 과실내부 온도가 -0.5℃나 그 이하에 도달한 후에 시작할 수 있다.

저온처리 중 과실내부온도는 매시간 소수 둘째자리까지 측정·기

록되고,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화물 내부의 온도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최소 3개의 온도센서를 과실내부에 삽입한다. 모니터링을 위해 추가 온도센서를 삽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준 온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추가로 삽입한 온도센서의 온도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3개의 온도 센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설치된 모든 온도 센서의 온도가 -0.5°C 이하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만 저온처리가 시작된 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저온처리 중에 0.00°C 이상의 온도를 기록한 센서가 있는 경우 그 저온처리는 무효가 된다.

집필진

윤해근 | 영남대학교

최 철 | 경북대학교

안순영 | 영남대학교

김기훈 | 경북대학교

신현욱 | 경북대학교

변봉용 |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산 포도 수출 프로토콜 및 국가별 수출 검역요건

발행 | 2019년 3월 5일

인쇄 | 2019년 3월 4일

저자 | 윤해근 외 5명

발행인 | 포도 수출연구사업단 윤해근

편집·인쇄 | (도서출판) 글밭 ☎ 053-853-4080

경북 경산시 하양읍 문화로 2길 5 하양KT지사 1층

등록 | 제 39호

ISBN 979-11-87502-29-6 13520

가격 : 비매품